
2023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등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23. 5. 7(일) ~ 5. 13(토)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I . 출장 개요 및 주요 일정	1
II . 주요 활동 결과	2
① 위원회-태국 음부즈만 MOU 재연장 및 양자회의	3
② 세계음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회의	9
③ 세계음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4
④ 국제반부패아카데미 학장 및 반부패 교육생 간담회 ...	36
⑤ 오스트리아 주 대한민국 대사 면담	38
⑥ 음부즈만 연구 관련 인터뷰	38
III . 평가 및 향후 계획	42

I

출장 개요 및 주요 일정

□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등
- 출장 기간 : '23. 5. 7.(일) ~ 5. 13.(토), 5박 7일
- 출 장 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출 장 단 : 위원장,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박정구 서기관,
안주연 정책비서, 장단비 통번역사

□ 주요 일정

일자	주요일정
5.7(일)	• 인천(11:30) → 비엔나(17:10) KE937
5.8(월)	• 태국 옴부즈만과 MOU 갱신 및 양자 회의 • IOI 지역이사 회의 • IOI 명예회원(Rafael Ribo)에 대한 황금훈장 수여식 • 호주 대사관 초청 행사
5.9(화)	• IOI 이사회 회의 세션 I • IOI 이사회 회의 세션 II
5.10(수)	• IOI 이사회 회의 세션 III • 오스트리아 의회 의장 초청 행사
5.11(목)	• IACA 학장 면담 • 반부패 교육훈련생 간담회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 면담
5.12(금)	• 옴부즈만 관련 연구 교수와 인터뷰 • 비엔나(18:40) → 인천(+1, 12:30) KE938

□ 옴부즈만 국제 네트워크 참여와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와 의사결정 등의 참여를 통해 IOI의 민주적·합리적 운영에 기여
- 각국의 옴부즈만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옴부즈만 다자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옴부즈만 개념의 세계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

□ 옴부즈만 교류·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홍보

- 한국(국민권익위원회)과 태국 옴부즈만 기관 사이 MOU를 재연장함으로써 양 국가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 태국 옴부즈만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양 국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 옴부즈만 관련 연구자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소개와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홍보

□ 국제적 반부패 활동 경험의 공유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방문을 통한 반부패 정책·제도 및 경험 공유와 반부패 글로벌 이슈·동향 파악
- 반부패 분야 연구 및 교육에 전문화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방문을 통한 반부패 교육 경험과 자료의 공유

1

위원회-태국 옴부즈만 MOU 재연장 및 양자회의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 5. 8.(월) 14:00-15:00 / IOI 사무총장실
- 참 석
 - (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박정구 서기관,
안주연 정책비서, 장단비 통역사
 - (태국 옴부즈만)
 - Mr. Somsak Suwansujarit(솜삭 수완수자릿, 수석 옴부즈만)
 - Mr. Songsak Saicheua(송삭 사이츠아, 옴부즈만)
 - Ms. Nalinpun Waisuebkao(국제업무 국장)
 - Ms. Kanokkwan Wongdontri(국제업무, 전문직위)
 - Ms. Kitiyabhorn Onchulee(국제업무, 실무자)
- 순 서 : MOU 재연장 행사 후 양자 회의 진행

시간	내용
14:00 - 14:05	위원장님 말씀
14:05 - 14:10	태국 옴부즈만 말씀
14:10 - 14:15	MoU 서명식
14:15 - 14:20	사진 촬영
14:20 - 15:00	양자 회의

나

MOU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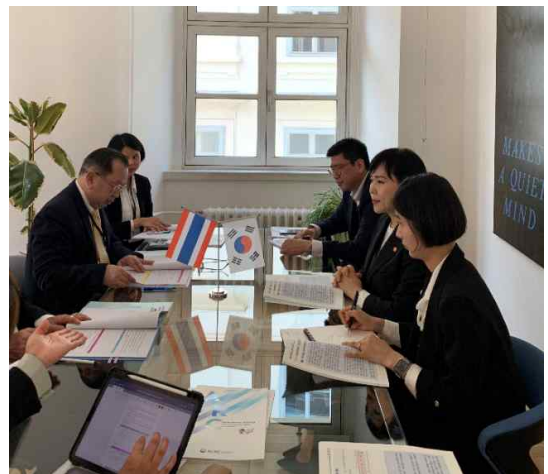
- 위원장님 말씀(Remarks by ACRC Chairperson)
- 태국 옴부즈만 말씀(Remarks by Ombudsman of Thailand)
- MOU 서명(MOU Signing)
 - 실무진이 양측 대표에게 MOU 원본 및 만년필 전달
 - 양측 대표의 MOU 서명란에 서명
 - 서명된 MOU를 상호 교환
 - 양측 대표의 MOU 서명란에 서명
 - 양측 대표 합의문 교환 후 악수
 - 사진 촬영(Photo Session)



다

양자 회의 주요 내용

국민신문고 외국인의 민원창구 운영, 한국 거주 태국인 민원 현황, 국민권익위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동신문고), 태국인의 한국 체류 시 보호 등에 대한 소개 및 논의



- 코로나로 인해 상호 교류가 부족했던으나 코로나 종식과 MOU를 계기로 상호 방문·교류 등 양국의 옴부즈만 협력 강화를 기대
- 양국 간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법, 옴부즈만 운영성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
- 양 국에 제기된 민원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향후 긴밀히 협조하여 양국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민신문고 외국인 민원창구 운영과 한국 거주 태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에 대해 소개
 - 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민소통 플랫폼이고, 정부 행정기관에 대해 불편 사항이나 고충이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도나 정책,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신문고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연결되어 원스톱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해 기준 1,117개 기관이 이용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간 1,000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며 연간 접속자수는 5,700만명에 이릅니다
 - 또한 국민신문고는 특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 태국어뿐만 아니라 미얀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 14개국 언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외국어로 신청된 민원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공간과 언어의 제약 없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외국어 민원은 총 10만 4백여건이고 민원의 대다수는 영어로 제기되었으며, 참고로 태국어로 제기된 민원은 지난해까지 5년간('18년~'22년) 93건 이었고 올해는 3월 기준으로 6건이 신청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아우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대해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임
 -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제도임
 - 특히 고충이 있어도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이 곤란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태국 정부는 태국인들이 적법하게 한국에서 체류하도록 권고하고 불법체류 시 한국 정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캠페인 중임

- 불법 체류 중인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
- 권익위의 민원해결 노력은 잘 알고 그 노하우는 태국 등 여러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권익위의 디지털시스템과 이동신문고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원함
-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감사하나, 이는 한국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므로 민감한 사안임
-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 옴부즈만인 권익위는 한국 거주 태국인들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태국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

다 태국 옴부즈만 소개

- 기관명 및 설립일자 : Ombudsman of Thailand / 1999년
- 설립 근거 : Constitution of Kingdom of Thailand
- 조직 : 수석 옴부즈만 1인, 옴부즈만 2인
 - 감사실, 자문관, 총무국, 조사국, 교류협력국, 인사과, 조기민원 해결과, 조사과, 정보통신기술과 등 14개과, 옴부즈만 연구센터 등

○ 주요 기능 : 민원에 대한 조사

-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공무원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가 개인이나 일반 공공에 피해를 주거나 부당함을 초래할 경우
- 법에 의해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경우

○ 태국 옴부즈만기본법에 보장된 옴부즈만의 권한

- 헌법 위반 관련 민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에 심리 요구
- 권한 밖의 사안은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처리토록 이송
-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나 답변을 요구
- 정부 조직의 수장부터 하급자까지 증거자료나 증언 등을 요구
- 옴부즈만 조사에 관련된 증거물, 사료 등을 법원으로부터 요구
- 민원이 야기된 모든 지역에 사전 통보 후 입장

2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3. 5. 8.(월) 15:30-16:30

□ 장 소 : IOI 사무총장 사무실

□ 참 석 :

지역회장	Mr Somsak SUWANSUJARIT (Thailand)
지역이사	Ms Hyun Heui Jeon (Korea)
지역이사	Mr Ajaz Ali KHAN (Pakistan)
불 참	Mr Shahnawaz TARIQ (Pakistan)

나

의제 목록

- 승인 의제 1.1 : IOI 아시아 지역 규칙 승인
- 승인 의제 1.2 : IOI 회칙 개혁 위원회
- 승인 의제 1.3 : IOI UN 워킹 그룹
- 고려 의제 2.1 2023년 IOI 아시아 회원기관의 IOI 서비스 수요
측정 설문조사 결과
- 고려 의제 2.2 2023년 IOI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

다

의제별 주요 내용

□ 승인 의제 1.1 IOI 아시아 지역 규칙 승인

- 이사직 공석 발생 시 후임 이사직 선출방법과 관련한 IOI 아시아 지역 규칙이 개정되었고 해당 규칙이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을 확인

※ 개정 주요 내용 : 이사직이 차기 IOI 세계회의 1년 이상 전 공석 발생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년 이내 공석 발생 시 전임자가 소속된 기관이 임명한 승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

□ 승인 의제 1.2 IOI 회칙 개혁위원회

- 2022년 8월 3일 러시아 연방 인권 고등판무관(HCHR RF)이 IOI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IOI 회칙에 회원자격 상실과 관련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항의 부존재에 주목
- 이사회는 2022년 8월 3일 해당 문제의 검토를 위해 운영세칙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회칙 17조, 7조, 10조의 개정안이 이번 이사회에 제안되었음
- 아시아지역 회장 제안에 따라 개혁위원회의 회칙 개정 관련 간략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 승인 의제 1.3 IOI UN 워킹 그룹

- IOI와 유엔의 관계 연구를 위해 IOI UN 워킹 그룹을 설립했고, 2020년 12월 16일 IOI UN 워킹 그룹은 ‘인권 증진과 보호, 좋은 통치와 법의 지배에서 옴부즈맨의 역할’ 또는 유엔 결의안의 승인을 위한 유엔 결의안 개정을 추진했음
- 이러한 결의안은 최근 개정되어 ‘인권, 좋은 통치 및 법치주의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옴부즈맨 및 중재자 기관의 역할’에 관한 유엔 결의안 A/RES/77/224로 채택되었음
- IOI와 유엔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IOI UN 워킹그룹은 IOI의 유엔 총회 영구 옵서버 자격 신청을 옹호하기 위해 IOI 회원국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 왔음
- 아시아지역 이사들은 IOI UN 워킹 그룹의 간략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확인하고 IOI 옵서버 자격 신청에 협조 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확인

□ 고려 의제 2.1 2023년 IOI 아시아 회원기관의 IOI 서비스 수요 측정 설문조사 결과 - 실행 계획 및 향후 단계 논의

- 2022년 5월 뉴욕 회의에서 IOI 아시아지역 회원들은 아시아 지역회장의 제안에 따라 아시아 사무국에 아시아 회원들의 IOI 서비스 수요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개발 위탁에 동의했음
- 이에 따라 2023년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023년 IOI 아시아 회원기관의 IOI 서비스에 대한 니즈 측정’ 설문조사에 32개 IOI 아시아 회원기관 중 10개 기관이 응답했음
- 설문조사 보고서는 IOI 서비스에 대한 니즈 평가, IOI 서비

스 카테고리별 제안, 2023년 IOI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 참여 등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에 따르면 IOI의 서비스는 교육, 세미나/컨퍼런스, 출판물, 지역 보조금 등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응답자의 만족도는 세미나/컨퍼런스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 출판물, 지역 지원금이 각각 그 뒤를 이었음

○ IOI 사무총장에게 설문조사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2023년 7월 방콕에서 열리는 IOI 아시아지역 회의 전에 아시아 회원들에게 설문조사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을 승인

-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지역/국제 교육/강연/세미나/컨퍼런스의 호스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시아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자는 아시아 지역 회장의 제안에 동의

○ 매년 지역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면 지역회장과 지역이사들이 IOI와 협력하여 아시아의 투표권 있는 회원들에게 홍보 추진

□ 고려 의제 2.2 2023년 IOI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의 개최 일정과 의제 초안(잠정 프로그램)

○ 2023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콕에서 '공정 행정, 좋은 거버넌스 및 법치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 세미나 및 2023년 아시아지역 회의가 개최될 예정

○ 2023년 IOI 아시아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의 잠정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아시아지역 주요 행사에 참석 고려

일자	잠정 프로그램
2023.7.9.	■ 비공식 모임 및 환영 리셉션
2023.7.10.	■ IOI 대표와 아시아지역 회원들간의 회의 ■ IOI 아시아지역회의
2023.7.11.	■ 국제세미나(특별강연, 패널토론) 공정한 행정, 좋은 거버넌스,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아시아 옴부즈만
2023.7.12.	■ 회장의 회의 요약 ■ IOI 아시아 지역 공동 언론 성명 2023

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가

참 석 자

□ 참 석 자

○ IOI 집행부(5) 및 지역이사(17)

※ 파키스탄 및 슬로베니아 옴부즈만 불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옴부즈만 대참(1)

○ IOI 사무국 직원 및 수행 직원



	이름	기능	국가	지역
1	크리스 필드	회장	호주	호주·태평양
2	다이앤 웰본	1 부회장	미국	북미
3	피터 보셔	2 부회장	뉴질랜드	호주·태평양
4	캐롤라인 소코니	재무이사	잠비아	아프리카
5	개비 슈바르츠	사무총장	오스트리아	IOI 사무국
6	플로렌스 카쥬	지역회장	케냐	아프리카
7	안토니아	지역이사	앙골라	아프리카
8	데보라 글래스	지역회장	호주	호주·태평양
9	숨삭 수완수자릿	지역회장	태국	아시아
10	전현희	지역이사	대한민국	아시아
11	아자즈	지역이사	파키스탄	아시아
12	나시엘리	지역회장	멕시코	카리브·남미
13	미스터 커슬리 컨신	지역이사	큐라소	카리브·남미
14	그웬돌리앙 모셀	지역이사	신트마르턴	카리브·남미
15	가브리엘 사비노	지역이사	아르헨티나	카리브·남미
16	안드레아스	지역회장	그리스	유럽
17	마리아	지역이사	포르투갈	유럽
18	롭 베렌스	지역이사	영국	유럽

19	마크 버트랜드	지역이사	벨기에	유럽
20	라이니어	지역이사	네덜란드	유럽
21	폴 두베	지역회장	캐나다	북미
22	나딘 마이유	지역이사	캐나다	북미

나

의제 목록

1	회의 개회 ① 회의 녹화 승인 ② 의제 승인 ③ 참석자 승인 ④ '22년 뉴욕 이사회 회의 결정 요약 승인 ⑤ 회의언어(영어) 승인
2	보 고 - 회장(호주) & 사무총장(오스트리아)
3	회원 관련 사항 ① 정회원 신청(브라질 3개 기관, 캐나다 2개 기관) ② 준회원 신청(모리셔스 1개 기관)
4	재정 사안 ① 현금 흐름표 및 예산 개요 ② 사무국의 통역/번역 비용 관리 ③ 2021/2022 감사보고서 ④ 2023/2024 외부 감사
5	지역 보조금 ① 보류 중인 지역보조금 개요 ② 지역보조금 2023/2024 (IOI 세계커퍼런스 및 총회)
6	교육/트레이닝 ① 최근 교육 이니셔티브 2022/2023 보고서 ② NPM 교육 라틴아메리카 ③ AI 교육 유럽 지역 ④ 지역의 교육 요구 사항 및 제안 요청
7	유엔 워킹그룹 ① 유엔 총회 상임 옵서버 자격 획득 ② 옴부즈만에 관한 유엔결의안
8	IOI 회칙 개정 ① 분과위원회 보고서 ② 제안된 개정안 논의 및 승인(제10조 회원 자격 상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제17조 회의 없는 결정)

9	2024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 ① 컨퍼런스 주최자 보고 ② 통역비용에 대한 IOI 자금 지원 ③ 지역 이사 및 IOI 임원 선출
10	위협에 처한 옴부즈만 ① 아이티 상황에 대한 IOI 성명서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보호자 업데이트
11	협력 및 프로젝트 ① 컨설팅 그룹 ② OECD와의 협력 프로젝트 ③ 양해각서 -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실질적인 가치 ④ IOI와 APT, FIO, ICIC 간의 각 MOU 업데이트
12	출판/커뮤니케이션 ① IOI의 공식 언어 검토 ② 아프리카 지역 비교 연구-진행보고서 ③ IOI 모범 사례 문서
13	지역보고서
14	기타 사항 ① 회의 빈도 ② 차기 IOI 이사회 회의 (2024년 헤이그)

다 의제별 주요 내용

1. 공식 개회

1.1 회의 녹화 승인

1.2 안건 승인

1.3 참석자 승인

1.4 2022년 5월 뉴욕 이사회 회의 결정 요약 승인

1.5 회의언어 영어 승인

2. 보 고

2.1 회장 보고(Mr. Chris Field)

- 뉴욕에서 열린 이사회 이후 파키스탄, 모로코,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등 8개국을 공식 방문 및 결과를 보고
-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제안할 여러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의

2.2 사무총장 보고(Ms. Gaby Schwarz)

- IOI 프로젝트, 진행 중인 교육 및 워크숍, 연구,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위협에 처한 옴부즈만(대출 지원), 회원 관련 사항(러시아 인권고등판무관실 회원자격 취소), 대외 관계 및 협력 등에 관한 보고

3. 회원 관련 사항

3.1 정회원(투표권 有) 신청 건 (5개 기관) 논의

IOI 규정 제2조 (2)항 회원자격 요건

- 헌법, 법률 또는 국조조약에 근거
- 공적기능 행사(잘못된 행정, 권리 침해, 불공정, 부패 기타 불공정으로부터 개인 또는 단체 보호)
- 기밀유지와 공정성이 보장된 운영
- 기능적 독립성 유지
- 민원 조사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의 보유
-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한 권고 권한의 보유
- 입법부 또는 선출기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연례적 또는 정기적 보고서 발간
- 입법부 또는 기타 선출기관에 의해 선출 또는 임명되거나 재직에 대해 그 기관의 승인 필요
- 법률 또는 헌법에 규정된 사유로 입법부 또는 기타 선출기관에 의해 또는 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임 가능
-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 보유

지 역	기 관	심의 결과
카리브·남미 (브라질)	연방 국선변호사 사무소(DPU)	정회원
	국가 옴부즈퍼슨 사무소(PFDC)	준회원
	연합 옴부즈만 사무소	회원자격 없음
북미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옴부즈퍼슨 사무소	정회원
	유콘 옴부즈만 사무소	정회원

3.2 준회원(투표권 無) 신청 건 (1개 기관)

지 역	기 관	심의 결과
아프리카	모리셔스 금융서비스 옴부즈퍼슨 사무소	준회원

4. 재무보고

4.1 2022-2023, 2023-2024 예산개요 & 현금흐름표

4.2 사무국의 통역 및 번역 비용 관리

- 이번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시 사용될 통역 및 기술장비 비용에 대한 승인

4.3 2021/2022 감사보고서

- 감사 결과 모든 중요한 거래가 적절히 기록되었고 IOI 자금은 IOI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비정상적인 수입이나 지출, 자기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음

4.4 2023/2024 외부 감사 수행 관련 견적

- 2023/2024 외부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마자르(mazars)로부터 견적을 받은 결과 3,300유로(세금 포함 3,960유로) 청구 예정

5. 지역 보조금

5.1 보류 중인 지역보조금

- IOI 지역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0/2011 회기부터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배정 예산은 해마다 다름)

연도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	65,200	27,500	45,000	-	28,000	27,293	42,000
연도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	48,072	41,999	42,000	39,442	20,773	27,960	-

- 2022/2023 지역 보조금 프로젝트에 27,960유로 할당
 - 올해 사업 규모는 약 42,000유로이며 6개 지역별로 균등하게 7,000유로의 보조금을 배분
 - ※ 14,000유로는 IOI 위기 기금으로 적립

5.2 2023/2024 지역보조금 (IOI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

- IOI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 개요
 - 시기 및 장소 : 2023년 5월 / 네덜란드 헤이그

- 주기 :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 목적 : 회원들이 직접 만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패널 토론과 실무 세션을 통해 상호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컨퍼런스는 IOI 총회 개최에 앞서 개최 예정
- 2023/2024 지역 보조금으로 제공될 42,000유로를 2024년 5월 헤이그에서 개최될 IOI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에 지원

6. 교육/트레이닝

6.1 최근 교육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2022/2023

- 2023년 3월 22일 위기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실시
- 참가자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모듈 사전 이수 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진행하는 세션과 그룹별 실습에 중점을 둔 세션으로 구성
- 45개 옵부즈만 기관에서 70명 이상이 신청하였고 그 중 18명 선정(지역적 균형, 참가 경력 유무, 언어 능력, 전문 분야 기준)
- 참가자들은 실습활동, 강사의 경험과 기술, 동료 참가자와의 교류, 상세한 설명 등이 큰 도움으로 평가

6.2 NPM을 위한 교육(카리브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 NPM(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 UN 고문방지협약 체결·비준시 설립해야 하는 독립적 국가기관. 무제한적으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구금시설 내 부당대우를 조사할 수 있음.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임

- 국제고문방지기구는 고문방지협회(APT)와 교육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NPM(National Preventive Mechanism)의 임무를 맡고 있는 옴부즈만을 위한 워크숍을 제공할 예정
 - 2023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예정이며 NPM 위임장을 소지한 스페인어권 IOI 회원 기관만 초청
 - 스페인어권 회원을 위한 워크숍 제공을 합의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15,000유로의 예산을 승인

6.3 인공지능(AI) 교육(유럽)

- 에스토니아 법무부장관실로부터 제안을 받은 교육으로 IOI와 협력하여 옴부즈퍼슨과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 1차 목표 : 인공지능과 자동 행정 결정 분야에 대한 IOI 위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인권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준비성 향상
 - 2차 목표 : IOI 회원국에게 정보시스템과 증거 처리 절차가 AI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침 제공
 - e-러닝 리소스 제공, 온라인 테스트 성공 완료 시 수료증 제공
 - 에스토니아 법무장관이 제출한 교육 제안(70,000유로)에 대해 논의하고 이 교육 이니셔티브에 35,000유로 배정

6.4 지역 내 교육 요구 사항

- IOI는 2009년부터 교육 이니셔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해 왔음
- IOI 사무총장은 어떤 교육이 회원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이사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

7. 유엔 워킹그룹

7.1 유엔 총회 상임 옵서버 지위 논의

- 유엔과 관련한 IOI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유엔 총회에 영구 옵서버 지위를 신청하는 것임
 - IOI 사무국은 뉴욕 주재 오스트리아 상설 공관과 긴밀히 연락 중
- 유엔 옵서버 지위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장애 요인, 신청서 제출 시기 등에 대해 논의
 - 신청서에는 IOI의 명칭, 가치, 원칙, 구조 및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옵서버 지위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서 첨부

7.2 옴부즈만 및 중재자 기관에 관한 유엔 결의안

- 유엔 총회가 2022년 12월 인권, 좋은 거버넌스, 법치주의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및 중재자 기관의 역할에 관한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채택했음을 공유
- 이 결의안은 2년마다 유엔 국가인권기구 결의안(NHRI)과 번갈아 가며 상정되며 2024년에 재상정 예정

8. IOI 회칙 개정

8.1 회원자격 상실(10조)과 신규 회원 자격(7조) 관련 규정 개정

- 2022년 8월 3일 러시아 연방 인권 고등판무관(HCHRRF)이 IOI 정회원 자격(투표권 有)을 상실했고 최초 사례였음

- 이 과정에서 현재 IOI 회칙에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만족스러운 조항과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됨
 - 제10조의 회원 자격 상실 규정은 언뜻 보기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문제 해결에는 부적절
- 이사회는 2022년 8월 3일 회의에서 운영세칙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결과 회원 자격 상실 조항의 개정을 제안
- 제10조 : 회원 자격 상실 개정안
 - 제10조의 회원 자격 상실 규정은 언뜻 보기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문제 해결에는 부적절
 - 사무총장,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자격 상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각자의 역할이 불분명
 - 회원 자격 취소는 궁극적으로 회원 자격을 승인한 이사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이사회가 해야 함(집행위원회는 의사 결정에서 제외)
 - 회원, 사무총장, 이사회 등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회장도 절차에 포함될 것을 권장
 -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결정 전 해당 회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명시

현행	개정안
제10조 회원 자격 상실 (1) 다음의 경우 IOI의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a) 해당 회원이 사무총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철회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제10조 회원 자격 상실 또는 정지 (1) 다음의 경우 IOI의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a) 해당 회원이 사무총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철회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b) 제9조 4항에 따른 회비 미납에 대해 이사회가 회원자격 취소 결정을 한 경우; c) 회원이 특정 멤버십 카테고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d) 회원이 제8조 8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원이 제8조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2) 제1항 (a)호에 따른 회원 철회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자격 상실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회원 자격 취소 건의 개요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회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해당 회원은 개요서에 대해 서면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기된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회원 자격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제9조 4항에 따른 회비 미납에 대해 이사회가 회원자격 취소 결정을 한 경우; c) 회원이 특정 멤버십 카테고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d) 회원이 제8조 8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원이 제8조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2) 제1항 (a)호 및 (b)에 따른 회원 철회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자격 상실은 제3항에서 고려하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회원 자격 취소 건의 개요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회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해당 회원은 개요서에 대해 서면으로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기된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회원 자격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정당한 자격을 갖춘 투표권 회원('신청인')은 다른 회원('피신청인')이 회원 카테고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는 회원의 행동 또는 임원진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주장된 행위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포함하여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 다른 투표권 회원 최소 1명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공정성과 자연적 정의에 대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a) 사무총장은 민원이 필요한 방식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접수된 경우 즉시 이사회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b)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해당 민원이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한 경우, 이사회는 민원의 성격을 피신청인에게 적절히 알릴 수 있는 충

< 신 설 >

현행	개정안
< 신 설 > (4) 제1항 (a)호에 따른 회원 자격 정지를 제	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c)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통지에 응답해야 한다. d) 피신청인이 불만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 회장과 협의한 후 30일 이내에 관련 규정, 신청인, 피신청인 및 지역 회장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기타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피신청인 답자 포함) 또는 보고서에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i)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ii) 피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또는 iii) 이사회가 피신청인이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f) 이사회가 제3항 (e)(iii)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해당 피신청인은 추후에 이사회에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 자격 정지 이후 피신청인의 행동 및/또는 활동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지역 회장의 조언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피신청인이 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언제든지 회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는 회원에 관한 문제를 이사회에 알릴 수 있다. 그러면 이사회는 위 3항 (b) - (f)에 명시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5) 제1항 (a)호에 따른 회원 자격 정지를 제

현행	개정안
외하고, 해당 회원이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하고, 해당 회원이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조 : 신규 회원 신청 개정안

- 제2조와 제6조는 회원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신청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회칙은 회원자격을 신청 서류와 법적 구조만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직과 임원진의 행동과 발언을 포함한 총체적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
- 회칙의 전면적 개편 대신 실사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 회장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어 실사 절차를 강화

현행	개정안
제7조 회원 가입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 (1) 모든 종류의 회원 가입 신청 또는 투표권 있는 회원이 되기 위한 신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신청이 제기된 지역의 지역 회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무총장은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집행위원회는 신청서의 승인 여부에 대한 조언과 함께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사회가 신청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 (1) 모든 종류의 회원 가입 신청 또는 투표권 있는 회원이 되기 위한 신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신청이 제기된 지역의 지역 회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역 회장은 제2조(2)에 명시된 국제 옴부즈만 표준 원칙에 대한 신청 기관의 약속과 해당 기관의 평판 및 행위(기관장의 평판 포함)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무총장은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집행위원회는 신청서의 승인 여부에 대한 조언과 함께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사회가 신청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

현행	개정안
< 신 설 > (3) 신청인은 이사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 있는 회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표권 있는 회원은 다음 총회에서 해당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집행위원회, 이사회 또는 의결권 있는 멤버가 멤버십 신청 또는 부여할 멤버십 카테고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멤버십 신청자의 적격성 또는 신청한 멤버십 카테고리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멤버십 또는 멤버십 카테고리를 선호하기 위해 제2조 및 제6조를 공정하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할 기회가 주어진다. (3) 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신청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4) 신청인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재검토한 후 이사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 있는 회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표권 있는 회원은 다음 총회에서 해당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집행위원회, 이사회 또는 투표권 있는 회원들이 회원신청 또는 부여할 회원 카테고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회원 신청자의 적격성 또는 신청한 회원 카테고리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회원자격 또는 회원 카테고리를 부여하기 위해 공정하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2조 및 제6조를 적용해야 한다.

- 8.2.1(10조 회원자격 상실)과 8.2.2(7조)에 대한 추가 사항은 논의 후 2024 헤이그 총회에서 공유할 예정

8.2 회원 없는 의사결정

- 회의 없는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회칙 제17조는 때때로 회의 개최 없이 사안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가 불가피
- 실무상 제17조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사무국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을 제안

- 기존 2/3를 과반수로 변경하되 응답이 없으면 연장된 기한과 함께 리마인더를 발송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

○ 이사회는 제17조 개정안을 논의하고 2024년 헤이그 총회에 제출하여 채택할 최종 초안에 합의

현행	개정안
17조 회의 없이 의사 결정 (1) 제28조에 따라, 오스트리아 협회법에서 특정 유형의 사안을 승인하기 위해 회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투표권 보유 회원, 집행위원회,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회의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 a) 투표권 있는 회원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회의 없이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경우 b) 결의안 초안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발송되며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30일의 답변 기간이 주어진 경우. 사무총장이 해당 사안이 긴급하다고 확인한 경우 최소 14일의 기간이 적용되며, 위기상황이라고 확인한 경우 연속 4일의 기간이 적용된다. c) 투표권 있는 회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 집행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해당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는 우편 또는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없이 의사 결정 (1) 제28조에 따라, 오스트리아 협회법에서 특정 유형의 사안을 승인하기 위해 회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투표권 보유 회원, 집행위원회,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회의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 a) 투표권 있는 회원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없이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확인한 경우 b) 결의안 초안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발송되며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30일의 답변 기간이 주어진 경우. 사무총장이 해당 사안이 긴급하다고 확인한 경우 최소 14일의 기간이 적용되고, 위기상황이라고 확인한 경우 연속 4일의 기간이 적용되며, 주어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회원의 절반 이상이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긴급한 사안 및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8일 이내의 회신 기한을 연장하여 회원에게 재차 통지한다. c) 투표권 있는 회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 집행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해당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3분의 2가 요청하지 않는 한 회원의 투표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는 우편 또는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9. 2024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

9.1 통역비용에 대한 IOI 자금 지원 승인

- 네덜란드 국가옴부즈만 사무소는 2024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차기 IOI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를 제안
 - IOI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최 측이 부담하며 통역 비용의 상당 부분은 IOI 예산에서 충당함
 - 네덜란드 국가옴부즈만 사무소는 통역 비용에 대한 기부금으로 10만 유로를 요청했음
 - 참고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2021년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의 경우 72,308.75 유로를 지원했음
- IOI 회장DMS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고 통역 지원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100,000유로 지원 승인

9.2 지역 이사 및 IOI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 총회 직후 이사회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4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총회 전 적절한 시기에 지역이사 선거 실시
- 회칙 제11조 2항은 임원의 임기 4년을 총회 사이의 기간과 연계하고 있으나 회칙 제19조 2항에서 IOI 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21년 더블린 총회 및 세계 컨퍼런스에서 임원이 취임할 때 임기를 4년으로 이해했고 다음 총회가 지난 총회로부터 불과 3년 후에 개최되므로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

10. 위협에 처한 옴부즈만

10.1 아이티 상황에 대한 IOI 성명서 승인

- IOI 사무국이 작성한 아이티 폭력 사태 관련 성명서 초안 승인
 - IOI는 폭력 행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아이티 공화국 시민 보호 사무소장이 정부 당국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의 보장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지지
 - IOI는 아이티 여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폭력 행위(약탈, 반달리즘, 방화 및 살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
 - IOI는 아이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업무를 하는 아이티 공화국 시민 보호 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존경과 지지

10.2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보호자 업데이트

11. 협력 및 프로젝트

11.1 컨설팅 그룹 구성 승인

- 2022년 아테네에서 열린 유럽IOI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동료 검토에 대한 수정 및 강화된 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 동료검토와 별개로 숙련된 전현직 옴부즈만 리더들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하여 동료 검토를 보완하는 임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컨설팅 기능 가능(지속적 논의 필요)

11.2 OECD 협력 연구 프로젝트 승인

- OECD는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열린 정부 문화 구축을 위한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이라는 IOI와의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
- OECD와 유럽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8년 OECD 연구보고서 열린 정부에서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을 인정
 - 새로운 주제 영역을 고려한 2018년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후속 보고서를 제안
 -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옴부즈만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18년 보고서의 설문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 필요

11.3 고문방지협회(APT)와의 양해각서 체결 승인

- IOI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APT와 2023. 2월까지(5년) 유효한 MOU를 체결
 - IOI는 이 MOU를 근거로 국가예방기구(NOM)으로서의 의무를 가진 회원들을 위한 여러 교육 워크숍을 제공
- 이사회는 APT와의 양해각서 갱신에 동의하고 사무국에 수정된 문안에 대한 협상과 새로운 MOU 체결을 위임

11.4 이베로아메리카 옴부즈만 연맹(FIO)와의 양해각서 체결 승인

- IOI는 2016년 이베로아메리카 옴부즈만 연맹(FIO)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이베로아메리카 파트너들이 기존 MOU가 구체적인 공동활동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한 사항 논의
- 이사회는 FIO와의 양해각서 수정 버전을 승인하고 사무국에 양해각서 서명 행사 조직을 위임

11.5 국제정보위원회(ICIC)와의 양해각서 체결 승인

- ICIC는 2021년 IOI에 연락하여 IOI가 MOU를 체결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문의
 - 옴부즈만이 종종 정보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IC와 MOU를 체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
 - 이사회는 ICIC가 제공한 양해각서 초안과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 후 사무국에 양해각서를 체결 위임
- ⇒ (벨기에 옴부즈만) MOU와 관련해 이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연말보고서에 공유할 것을 제안

12. 출판/커뮤니케이션

12.1 IOI 공식 언어 검토

- 아랍어를 IOI 공식어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 진행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지속하기로 결정
 - 옴부즈만 관심이 필요한 지역 중 아랍어 사용 지역이 다수이고 이미 UN에서도 공식언어로 채택했으며 IOI의 포용성을 고려

12.2 아프리카 지역 비교 연구

- IOI 사무국이 2022년 9월 아프리카 옴부즈만 기관 비교 연구 (빅터 아이예니 교수)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 수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음
 - 연구자가 수술을 받아 2022년 가을 이후 추가 진전은 없었으며 2023년 여름까지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함
- 연구자의 건강상의 이유이나, 연구 중간 결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

12.2 IOI 모범 사례 문서

- IOI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알리는 주요 기능을 다루는 일련의 논문 형태의 지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베스트 프랙티스 보고서(BPP)를 도입
 - 가장 최근의 BPP(8호)는 이스라엘 옴부즈만에서 개발했고, 내 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또 다른 BPP(9호)도 개발했음
 - 이스라엘 옴부즈만은 최근 고충처리 및 고령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BPP(10호)를 발간하여 IOI 커뮤니티와 공유하기를 원함
- ⇒ **(빅토리아주 옴부즈만)** 우수사례로 공유된 제도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고서 발표 후 4년 뒤 후속 리뷰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

13. 지역보고서 보고

- 6개 지역 회장이 각 지역의 옴부즈만 활동 현황에 관해 보고
- 한국 지역보고서(2022년 7월 이후 옴부즈만 주요 활동 소개)
 -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접수·조사·처리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능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사항을 살펴보고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며, 조정·합의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음
 - 2022년도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37,569건 처리 건수는 37,598건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져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용률은 25.7%로 전년 대비 4.6%p 상승하였고 그와 더불어 고충민원 만족도 또한 4.6%p 상승하였음
 - 2023년 3월 현재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29,569건 처리 건수는 27,596건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0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AOA 국제컨퍼런스에서 옴부즈만의 인권보호 역할과 관련해 집단민원 해결의 의미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한 주요 집단민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2015-2018) 튀니지에 수출한 온라인 정부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시스템(e-people)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부터 튀니지 정부의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신문고 운영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을 확보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고도화 사업 추진 예정임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3월 미얀마,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5개국 주한 대사 등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민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서비스” 제도를 소개하였음

14. 기타 사항[차기 IOI 이사회 회의 개최 보고]

- 2024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국가가옴부즈만 주최 제13회 IOI 세계컨퍼런스 및 총회가 헤이그에서 개최됨을 재확인
- 5월 14일에 총회가 열리고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

4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반부패 교육생 및 학장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3. 5. 11.(목) 11:00-13:30
- 장 소 : IACA 강의실 등
- 참 석



소속	참석자
IACA	Thomas Stelzerr 학장, 최유진 과장, Ms Dijana
위원회	위원장,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박정구 서기관, 안주연 비서, 장단비 에디터, 교육생 인솔 직원 3명 (정동률 과장, 김일문 사무관, 황인준 주무관)
대사관	윤주석 공사참사관, 남궁준 서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국외 교육훈련생 17명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소개]

- IACA(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반부패 분야 연구 및 교육·훈련 담당을 위한 국제기구로 오스트리아 정부 주도로 2010.10월 발족
- 한국은 2010.12.29. IACA 설립협정에 가입서명, 2011.12.15 비준(26번째 당사국)하였고 2012.2.13. 협정 국내 발효
- 2012.3.27. ACRC-IACA 협력 MOU 체결
- 회원국 및 민간기구·기업체 등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매년 5만 유로의 기여금을 납부

□ 간담회 주요 내용



○ (IACA 학장) 한국 반부패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반부패 분야 국제동향 및 우수 사례의 파악,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 및 교육자료 공유 등 환담

○ (교육생) 국제적 반부패 이슈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각급 기관들에 도입 가능한 정책 내용 탐구 등 격려



5

오스트리아 주 대한민국 대사 면담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3. 5. 11.(목) 18:00
- 장 소 :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 관저
- 참석자 : 위원장 및 수행원 4명(권익위), 함상욱 대사, 이수철 참사관, 이유빈 서기관 등 (대사관)

□ 주요 내용

- 오스트리아 개황, 기업 등의 고충 동향,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 방법 및 절차 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등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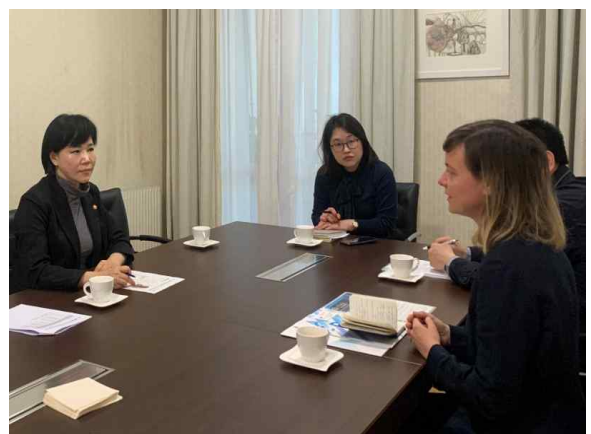
6

옴부즈만 연구 관련 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 일 시 : '23. 5. 12.(금)
10:00-11:30
- 장 소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



○ 요청자 : MS Julia Dahlvik

○ 소속: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H Campus Wien

연구 개요

- 연구 제목 : 디지털 공공 서비스 및 정의에 접근하는 옴부즈만의 역할(Digital public services and ombuds role in access to justice)
- *기존 연구 : 사업명: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과 국가를 중재하는 옴부즈만 위원회(2018-2020)
- 연구 기간 : 2023. 2. 1. - 2027. 1. 31.
- 연구자금지원 : FWF(Austrian Science Fund)

나

인터뷰 내용

< 요청자 >

- ACRC 현장(2024년)에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 목적을 설명
- 공공 부문의 디지털 변환과 관련된 문제 및 불평등과 공공 행정의 맥락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을 생성
-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제 비교 연구로, 사법, 공공 서비스 및 디지털화에 대한 접근에 대해 옴부즈 직원(공공 행정 직원 및 시민과 함께)과 인터뷰를 수행할 계획
 - 시민과의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옴부즈 직원 인터뷰, 참가자 관찰, 웹사이트 및 문서 분석을 포함하여 북반구 및 남반구 국가의 다중 지역 사례를 연구

- 다양한 옴부즈 기관에서 일상적인 옴부즈 작업의 관행과 과제 및 디지털화 맥락에서 시민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연구
-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ACRC에서 2~3주간 (무급) 인턴십을 하거나 ACRC의 아웃리치 행사에 참여를 원함

〈 위원장 〉

- ACRC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직접 상담을 통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 해결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만족감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 민원처리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법률과 제도가 그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임
 - 국민신문고는 천여개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민원을 해결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기관에 민원 전달 및 해결을 요청하는 시스템
 - 향후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원 처리에 따른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천만건 이상의 민원이 e-People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되는데, e-People은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이 어려워 권익위 직원이 직접 해결하고 있음
- 한편 ACRC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도 있음

- ACRC는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충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이나 관련 부처와 협조하기도 함
 - 불법주정차, 공동주택 소음이 지난 해 가장 많은 민원이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례도 존재하고, 또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행동 등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도 있음
 - 의대 정원 확충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과의 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와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임
- ACRC는 민원의 청취 및 해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기 위해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음
- 국민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쌍방향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 한국의 국민신문고는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이고, 현재 14개국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접근 가능
 - 다만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때로는 여론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익집단이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국민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는 사례), 여론조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민패널을 모집하여 운영 중임(현재 2만 여명 → 10만명 목표)

□ 태국 옴부즈만 협력 강화

- MOU 재연장에 따라 당국 간 옴부즈만 정책 경험 및 제도, 합동 고충청취 간담회 등 활발한 교류·협력 강화
 - ※ 태국은 반부패와 관련하여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으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
-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 재외국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태국 옴부즈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국제 옴부즈만 교류 지속

- 2024년 네덜란드 개최 예정인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한국의 집단민원 해결 등 우수 옴부즈만 제도 소개 추진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옴부즈만 디지털 시스템 적극 홍보

□ 디지털 옴부즈만 국제 비교연구에 기여

- 디지털 공공 서비스와 정의에 접근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에 대한 협조
- 연구자(교수)는 한국 옴부즈만 연구를 위해 위원회에서 인턴십 또는 아웃리치 행사 참여를 원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
 - 연구자는 공공 서비스 및 디지털화 등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직원 및 시민과 인터뷰, 참가자 관찰 등 수행 예정

참고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소개

□ 개 요

- 명 칭 : 세계 옴부즈만 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IOI)
- 설립형태 :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
- 설립연도 : 1978년
- 소 재 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사용언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설립목적

-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 옴부즈만 사무소의 연구발전을 위한 지원
- 옴부즈만과 이해 당사자들의 교육계획 운영 및 발전도모
- 옴부즈만기구에 대한 정보와 연구자료의 수집 · 보관 · 교류
- 세계의 옴부즈만들간 정보 · 경험 교환 및 발전도모
- 옴부즈만개념의 확산과 옴부즈만기구의 연구 · 발전을 위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장학금 수여

□ 회 원

- 회원구분 : 정회원(투표권有), 준회원(투표권無), 명예종신회원
- 회원현황
 - 125개국 232개 회원
 - 한국은 위원회 포함 총 7개 기관이 가입 및 활동
 - 구성 : 6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 IOI 회원 지역별 분포 현황 》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회원국 수	32	13	10	17	51	2

※ 아시아 13개국 : 대한민국(이사국), 바레인,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사국), 마카오, 인도, 요르단, 스리랑카, 태국(이사국, 지역회장), 동티모르, 이란, 필리핀

□ 회의체

- 총 회 (Meeting of the Institutional members)
 - 참석대상 : IOI 정회원 (준회원 : 총회 참석은 可, 의사결정권은 無)
 - 개최주기 : 매 4년
 - 주요역할 : IOI 규정개정, 회원 가입 등 중요 현안 최종 결정

※ '24년 차기 총회는 네덜란드 헤이그 개최 예정

○ 이사회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참석대상(25) : 집행부(5), 지역회장(6), 지역이사(14)
- 개최주기 : 연 1회
- 주요역할 : 신규 회원 가입 심사, 재무감사, 규정개정, 훈련·사업 계획 등 협회 운영 관련 사항 논의 및 결정

○ 집행부 회의

- 참석대상 :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 집행부는 IOI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에서 해임, 교체, 충원이 결정됨

○ 하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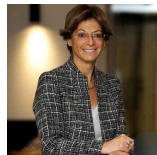
- IOI 이사진의 결정에 의해 필요 시 하부 위원회 설치
- 현재 선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위원회, 훈련위원회 운영

□ 사무국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내에 설치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수석 옴부즈만(Ms. Gaby Schwarz)이 사무총장 취임('22.8.1.)

[붙임 : IO 집행부 및 지역이사]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Mr. Chris Field	Ms. Diane Welborn	Mr. Peter BOSHIER	Ms. Caroline Sokoni	Ms. Gaby Schwarz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지역회장					
Ms. Florence Kajuju	Mr. Somsak Suwansujarit(태국)	Ms. Deborah GLASS	Ms. Nashieli Ramírez Hernández	Mr. Andreas I. Pottakis	Mr. Paul DUBE
					

지역이사					
Ms. Antónia Florbela De Jesus Rocha Araújo	Ms. Jeon Hyun-Heui	Mr. Peter BOSHIER (제2부회장)	Mr. Keursly Concincion	Ms. Maria Lúcia Amaral	Ms. Nadine mailloux
					
Ms. Busisiwe Mkhwebane	Mr. Ajaz Ali Khan(파키스탄)	Mr. Chris Field (회장)	Ms. Gwendolien E. MOSSE	Mr. Rob Behrens	Ms. Diane Welborn
					
Ms. Caroline Sokoni	Mr. Shahnawaz TARIQ(파키스탄)		Mr. Gabriel Savino	Mr. Marc BERTRAND	
					
				Mr. Peter SVETINA	
					
				Mr. Reinier VAN ZUTPHEN	
					

참고 2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소개

□ 기관 개요

- 명 칭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성 격 : 국제기구
 - ※ '11.3.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설 립 : 2010년 10월

□ 설립배경

- UN반부패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국제기구가 필요
 - ※ UN총회('09.12.24), ECOSOC총회('09.7.30), UN반부패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09.12.1) 의결 등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 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 UN 마약범죄국(UNODC), EU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 설립목적

- 반부패 분야에 대한 총체적·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 반부패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과 공유
- 부패방지 업무와 부패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세계 반부패 행위자 간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 촉진

□ 주요 업무

- 세미나와 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와 관련한 동료 간(peer-to-peer) 교육 및 훈련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 각 분야의 반부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 교육 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부여
 - ※ 학습모듈 :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부패와 경제, ③정치와 부패, ④기업과 부패, ⑤반부패와 법률, ⑥(반부패)법집행, ⑦(부패)예방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정부, 민간, 국제,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및 반부패 분야 연구경력을 갖춘 학자
- 국제반부패여름아카데미(IACS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반부패 실무진을 위하여 매년 7월 개최되는 2주 단기과정
- 기타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

부패 예방(Prevention)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부패 측정 - 반부패 노력의 성공 사례 - 공공부문 반부패 전략 수립 - 조달시스템, 민간부문 법률준수 프로그램 -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 운영 - 감사기구의 중요성	- 상호법률지원 -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 공조 - 부패자산 추적 및 환수
수사(Investigation)	자산회복(Asset Recovery)
- 사례연구 - 조사 및 수사 기법 -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 은닉자산 추적, 회복 및 동경 - 불법적 자금흐름 차단 - 정부의 감시 시스템

□ 조직구성

- 당사국총회(Assembly of Par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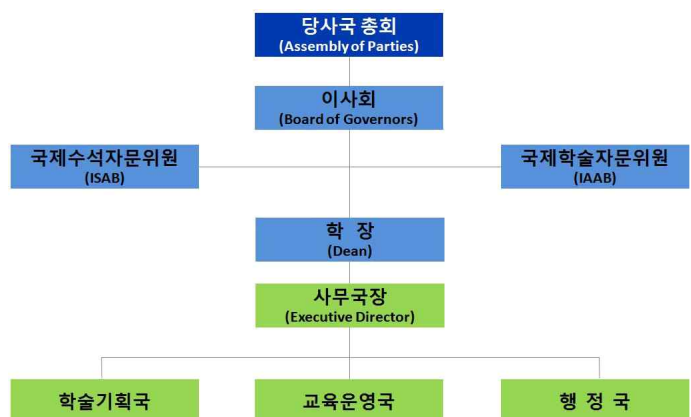
- 집행이사회(Board of Governors, 11명)

- 국제선임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15명 이내)

- 국제학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 15명 이내)

- 학장(Dean)

- 사무국 : 학술기획국, 교육운영국, 행정국



□ 자원 조달

- 초기 설립비용은 오스트리아 정부 측에서 부담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회원국, 민간기구 등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